

2021년도 제3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1. 18.(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2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89건(안건번호 제2021-161522호~16241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61522호~16152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1527호는 웹하드에서 최신 웹소설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1528호는 <<<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의 예고편, 홍보 영상 및 편집 영상을 제공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거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1529호~16241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8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3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2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오타 및 19페이지의 A 위원님 발언은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무방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오타 및 일부 내용에 대해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19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 제2021-161522호~16241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61522호~161526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등 5건을 각각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8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1-16152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13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1522호~16152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1522호~161526호

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1527호은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웹소설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 ‘◆◆◆◆◆◆’ 1권을 1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1-16152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소설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152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심장섭, 위정현,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1527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1528호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 블로그에 영상 '△△△△△△△△△△△△△△△△'을 제공중인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1-16152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영상의 예고편, 편집 영상 등 4건의 짧은 영상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전체적으로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거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1528

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해당 저작물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된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해외 OTT 서비스에서 독점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아직 해당 서비스가 런칭되지 않았음.
- E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는 영화 등을 홍보하는 블로그로 보임.
- C 위원: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들은 블로거가 만든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복제하여 왔음. 다른 영화의 소개 포스트를 함께 살펴보면, 예고편, 티저, 편집영상 등 심의대상 게시물과 성격이 유사한 짧은 영상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음. 이 중에서는 공식 홍보 영상인 것도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도 있음.
- C 위원: 4개 영상 중 2개는 권리자가 제공한 것을 복제·전송한 것이고, 2개 또한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만든 것을 가져온 것임. 특히 마지막 편집영상에 대해 공정이용 해당성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편집영상을 만든 사람과 원저작물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편집영상의 경우 원저작물과 편집영상 제작자, 편

집영상 제작자와 게시자 간의 관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임.

- C 위원: 공정이용은 원저작물과 편집 영상 간의 관계지, 편집 영상과 심의대상 게시물과의 관계는 아님.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시정권고를 할지, 말지 다루는 것인데 공정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편집영상 제작물 그 자체로 블로그와의 관계를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편집영상 제작자를 별도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함.
- B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보아야 함. 편집영상이 아닌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임.
- E 위원: 원저작물이 있고 이를 편집한 다른 영상이 있는데, 이 편집영상물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는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보임. 2차적저작물이 보호된다면 해당 저작물을 다시 불법복제한 것이므로 따로 살펴볼 수 있음.
- B 위원: 심의 대상은 4건의 영상이 URL 하나에 묶여 있고 각 영상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에 대해 각각 나누어 시정권고할 수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 전체로 보아 어떻게 의결할지 결정해 주셔야 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안건번호 제2021-161528호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전체적으로 부결 의견이신 것 같음.
- B 위원: 전반적으로 보아 권리 침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저작권자가 이런 홍보성 영상까지 일일이 삭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보호원의 한정된 행정력을 이러한 사안에까지 행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저도 부결 의견임.
- C 위원: 권리자가 제공하고 있는 영상 2건은 제 의견도 그러함. 그런데 편집 영상은 8시간 분량 중에 14분을 취사선택해서 편집한 것으로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듦. 편집영상 제작자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편집영상의 저작권 침해는 별도로 다루고 새로 만들어진 영상은 별도의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의 개연성이 높을 수 있음. 이러한 창작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 B 위원: 2차적저작물이면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인가 낮아지는 것인가.
- C 위원: 별도의 저작물로 본다면 높아진다고 봐야 할 것임. 그다음 다른 차원에서 시정권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B 위원: 만약 2차적저작물이라면 그 저작권자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인데, 그 사람의 보호법익에 가중치를 두고 우리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C 위원: 우선 2차적저작물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하고, 그

경우에 원저작물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새로운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 시정권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편집 영상만을 서비스 하는 곳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합법 시장에는 없음.
- D 위원: 유튜브에는 이러한 요약 영상이 엄청나게 많음.
- 강나래 전문위원: 최근에 패스트영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의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상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특정 인물, 주제를 편집해 제작하는 영상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안마다 저희가 일일이 창작성 등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D 위원: 유튜브에 비슷한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고 광고도 올라가 있음.
- C 위원: 그러한 부분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서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듦. 본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임.
- E 위원: 본 사안의 편집영상은 편집 자체가 아주 조잡하여 창작성이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원저작물과의 관계만 판단하면 되는데, 원저작물의 시장과의 관계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임. 분량이

14분이긴 하지만 원저작물의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으므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광고도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전원 부결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안전번호 제2021-161528호는 부결하도록 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1529호~162410호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중점](방송)프렌즈 더 리유니언(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1539호는 웹하드에서 방송 '[중점](방송)프렌즈 더 리유니언(2021)'"을 22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5. 27. 공개한 해외 드라마로 웨이브에서 정식 이용 가능함.

(음악 '(음악)신청곡 (Feat. SUGA of BTS) (가수: 이소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1871호는 웹하드에서 음악 '(음악)신청곡 (Feat. SUGA of BTS) (가수: 이소라)'을 90포인트에 제공 중임. 해당 음악이 포함된 가수의 앨범 전집을 전송하고 있음. 2021. 9. 27 발매한 국내 음악으로 멜론, 바이브 등에서 정식이용 가능함.

(음악 '[(음악)너의 눈물이 나의 눈을 적실 때 (가수: 에일리(Aile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2158호 웹하드에

서 음악 ‘[(음악)너의 눈물이 나의 눈을 적실 때 (가수: 에일리 (Ailee))’을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해당 음악이 포함된 드라마 OST 를 전체 제공하고 있음. 2021. 9. 27. 발매한 국내 음악으로 멜론, 바이브 등에서 정식이용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61529호~16241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1-161529호~16241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1529호~16241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61528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61522호~161526호, 제2021-16152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1-161529호~16241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2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